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209

발의연월일: 2025. 2. 17.

발 의 자:차규근・신장식・김선민

박은정 • 정춘생 • 김준형

강경숙 • 이해민 • 오기형

황운하 · 김재원 · 서왕진

윤종오 · 용혜인 · 김영환

김남근 • 한창민 • 백선희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적시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자산운용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에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금액이 보험회사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한도를 정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은행, 상호저축은행 또는 금융투자업자 등 다른 금융업권과는 달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시가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금액은 시가 등이 아닌 취득원가를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법이나 대통령령도 아닌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규

정하고 있음.

그러나 IMF 사태 이후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유가증권의 현재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투자신탁회사들이 파산에 이른 것을 계기로 모든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 시가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되었으나 보험회사만 예외적으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그리고 채권 또는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총자산과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금액에 대하여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규제할 때와 비교하여 자산운용비율이 왜곡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실질 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06조제4항 및 제106조의2 신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및 주식소유의 합계액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한다.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2(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보험회사는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2는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실행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는 보험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06조에서 정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는 보험회사는 제10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106조에 따른 자산운용비율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훼손 우려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연장할 수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06조에서 정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채권 또는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매년 해소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는 자산가격, 총자산, 자기자본 등의 변동에 따라 실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실행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매 1년이 경과할 때마다 30일 이내에 변경된 실행계획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된 실행계획을 다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3조(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의 적용례)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결권 제한 대상 및 범위는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실행계획을 기준으로 한다.
- 제4조(배당보험계약의 이익배분기준에 대한 특례) 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106조에서 정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여 보

유하는 채권 또는 주식을 매각하여 발생한 매각 차익을 배당보험계 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항의 실행계획에 따라 채권 또는 주식을 매각한 최초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 차익은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에 부칙 제2 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배당보험계약에 대해서 는 배분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刊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
율) ① ~ ③ (생	략)			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주
				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u>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u>
<u><신 설></u>				제106조의2(자산운용비율을 초과
				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
				한) 보험회사는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다른 회사
				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
				사할 수 없다.